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(공포)

제 명: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제정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함

주요내용

- 가.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- 나. 선발절차, 선발시기 및 인원관한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및 수당지급의 중지여 관하 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모범공무원 선발된 자의 기록부 작성 및 관리 규정(안 제7조)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



2024년 12월 20일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53호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
2.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
4.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

제3조(선발절차)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

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이 의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, 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.

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
제4조(선발시기 및 인원)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시행하고,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한다. 다만,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 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

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수당 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.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
4.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진출된 때

제7조(기록부 비치)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

원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